
금연을 위한 조치

담배갑 포장지 양면에 경고 문구 의무화 등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과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광고분야, 금연 및 절주를 위한 조치, 보건교육 실시 등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연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1. 관련 조항

- 법 : 제8조 제3항 및 제9조
- 시행령 :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 시행규칙 : 제4조 내지 제7조, 별표 1 및 별표 3

2. 경고문구의 표기

가. 표기 대상

- 담배갑 포장지 앞·뒷면(종전 : 옆면)
-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 잡지 광고

나. 표기 기준

1) 표기 방법

- 경고문구 :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경고 :”라고 표시하고 이를 기재
- 담배갑 뒷면 : 앞면과 다른 경고문구를 선정 · 표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 문구 중 하나 선정)
- 광고물에 표기하는 경고문구 : 담배갑 앞면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와 같은 문구

2) 사각형의 크기

- 제조담배의 담배갑 포장지 : 포장지의 앞 ·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
- 잡지를 이용한 광고

(단위 : 밀리미터)		
광고면적	표준 규격	사각형의 크기
B ₄ 초과	257×364 초과	86×21.5 이상
B ₄	257×364	86×21.5
A ₄	297×210	70×17.5
B ₅	257×182	60×15
A ₅	210×148	50×12.5
A ₆ 미만	210×148 미만	50×12.5 미만

○ 스티커 또는 포스터 :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잡지 광고에서 정한 광고면적에 대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히 잘 보일 수 있는 크기

3)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 : 담배갑 포장지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고 선명한 색상

4) 글자체 : 고딕체

5) 표기 위치

○ 제조담배의 포장지 : 앞·뒷면 하단

○ 잡지·스티커·포스터 :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

다. 행정사항

1) 표기 기준일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고문구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6개월 전에 일간지에 광고하거나 판보에 고시해야 한다.

○ 동 고시 전에 제조·수입된 담배, 이미 발주된 담배,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는 경고문구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1년간 판매 가능

2) 행정조치

○ 감시·감독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건관련단체가 합동으로 실시

○ 국민들로부터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 표기기준 위반사항 발견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발 조치

3) 벌칙 :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다른 경고문을 표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적용)

3. 광고·판촉 활동의 금지, 제한

가. 광고의 허용범위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표시판·스티커·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광고 내용이 외부에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금지)

2) 품종군별 연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의 잡지 광고

○ 잡지 :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 외국 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간행물로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된 잡지

○ 잡지의 명칭·내용·독자 기타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잡지는 제외

○ 외국 정기간행물로서 외국 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는 제한을 받지 않지만 판매가 1만부 이상인 잡지 광고는 제한을 받는다.

(적용방법)



담배 제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경우,
회사명칭은
사용할 수 있으나
담배 이름 사용 등
제품 광고는
불가능하다.

-'95. 8. 31까지 담배사업법의 적용(연 120회)을 받았으나

-이 법령의 적용으로 '95. 9. 1부터 '95. 12. 31까지 41회 이상 100회 이하를 광고 한 품종군은 20회만 허용됨.

예) '95. 8. 31까지 잡지 광고 110회를 했을 경우 : 10회만 인정

'95. 8. 31까지 잡지 광고 10회를 했을 경우 : 50회 인정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
를 후원하는 행위

○ 후원하는 자(회사 이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제품 광고(담배이름 사용)는 불가

○ 행사 목적·내용·참가자·관람자·
청중·기타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

4) 국제선이 항공기 및 여객선 :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 부두 대합실에 이 법령에 위반되게 설치된 담배광고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즉시 철거 조치

나. 광고·판촉 활동의 금지

○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제외한 일체의 판촉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시각을 위한 견본품, 담배 판촉을 위한 물품 제공 금지

- 포스터 등 광고물 제작 시 여성·청소년의 인물묘사 금지

다. 광고의 적용 조건

1) 담배제조자·수입 판매업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에게 광고를 대행토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것으로 봄

2) 담배의 광고물 등

○ 제조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흡연자에게 적간접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해서는 안된다.

○ 흡연 경고문의 내용 및 위치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안된다.

3)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는 광고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

- 한국담배협회는, '제조담배 판매에 관한 자율 규약'을 운용하고 있음

4) 보건복지부장관은 흡연경고문구의 표기가 없거나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 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라. 행정사항

1) 행정조치

○ 제조담배에 대한 광고·판촉활동에 대한 감시·감독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하되 보건관련단체의 협조를 받는다.

○ 국민들로부터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계도·계몽

○ 위반사항은 관할지역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 잡지광고 : 전국적 조사가 필요하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

2) 시행일

○ '95. 9. 1부터 시행

○ 단 법령 시행 당시 지정 소매인 영업소에 전시 또는 부착된 제조 담배의 광고물은 '96. 12. 31까지는 종전 규정(담배사업법령) 적용

3)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적용)

4.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

가. 설치 허용 장소

1) 미성년자 보호 법령에 의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 금지 장소(단란주점, 유흥점객업소, 성인오락실, 무도장 등)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판매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자판기는 내부에 설치하고 구입은 점포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편법설치 금지

3)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자판기 설치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자판기 이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

-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휴게실 등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자판기 이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장소

나. 적용 제외 조건

'가' 항의 설치허용장소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 학교 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

○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지구 등

다. 행정사항

1) 시행일 : 즉시

('97. 7.1부터 과태료 부과)

담배 자동판매기는,
 미성년자 보호법령에 의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금지 장소,
 지정소매인·기타 담배판매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자판기
 설치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자판기 이용을 끊하게 할
 수 있는 장소 등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99

2) 행정조치

○ 청소년 흡연율 증가와, 청소년들이 주로 담배자판기를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95. 9. 1부터 허용장소 외에는 신규설치를 불허

○ 설치허용장소가 아닌 장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를 철거 또는 이전 설치하지 않을 경우

- 과태료는 '97. 7. 1부터 부과

- 불법 설치된 담배자판기는 지속적 행정 지도를 통해 '95. 12. 31까지 설치 허용장소로 이전 혹은 철거토록 시·군·구의장이 적극 계도

※ 자판기를 통해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에도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벌칙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담배의 판매 금지 등

가. 담배의 판매 금지

담배 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음.

나. 행정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소매인 등 담배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도록 계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소매인 영업소 외부에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문구를 표기하게 권장하거나, 의문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2) 각 가정에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함께 미성년자에게 담배심부름을 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3) 시행일 : '95. 9. 1

4) 벌칙 :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자료 : 보건복지부〉